중소상장기업의 배임 및 횡령사건에 관한 연구

연구위원 권세훈·정윤모*

근래에 중소상장기업의 횡령이나 배임사건이 자주 발생해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횡령 배임 사건에 관한 거래소 공시와 주요 사건의 사례를 수집하여 그 실태 및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2005년 1월부터 2010년 9월 사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총 40개사, 코스닥시장의 경우 총 146개사가 배임·횡령 사건을 공시하였으며, 공시된 사건의 금액 합계는 유가증권시장 1조원 이상, 코스닥시장 약 2조4천억원이다. 그리고 배임·횡령사건을 공시한 상장회사 중에서 93개사가 결국은 상장폐지되어 배임·횡령사건과 상장폐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사건들은 주로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중소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외이사 및 감사 관련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소액주주들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회사의 경영을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I. 서론

근래에 중소상장기업의 횡령이나 배임사건이 자주 발생해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이 경영자나 최대주주 등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회사 규모에 비해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커 상장폐지나 도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이나 횡령은 업무상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근래에 중소상장기업의 횡령이나 배임사건이 자주 발생해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본 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위원 권세훈 Tel: 02-3771-0633 E-mail: sehoon@kcmi.re.kr
연구위원 정윤모 Tel: 02-3771-0622 E-mail: cym@kcmi.re.kr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대규모적으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기업지배구조나 내부통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은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그러나 중소상장기업의 경우 최근까지도 자주 대규모 배임 및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극단적 형태인 배임 및 횡령 사건은 일반 주주 및 채권자 등에게 불필요한 투자위험을 유발한다. 이는 결국 중소상장회사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켜 기업경쟁력과 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국내 중소상장기업의 횡령 및 배임사건에 관한 본격적인 실증 및 사례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최근 5년여에 걸쳐 거래소에 공시된 중소상장회사의 배임 및 횡령사건들을 분석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중소상장회사의 배임 및 횡령사건의 실태 분석

1. 배임·횡령 사건의 공시규제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특히 손익에 관한 사항 중의 하나로 임직원 등에 의한 배임 및 횡령을 의무적 공시사항인 주요경영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법인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임·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 시장에 공시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적 공시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배임·횡령사건에 대한 중요성(materiality) 판단에 따라 시기별로 다소 변동이 있었다.

거래소에 의한 배임·횡령사건의 공시규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별도로 행해지고 있으나, 양 시장에서의 규제의 기본적인 골격은 서로 비슷하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였고, 임원에 대해서는 배임·횡령 금액기준을 삭제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공시하도록 하여 공시의무기준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거래소에 의한 배임·횡령사건의 공시규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별도로 행해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골격은 서로 비슷하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1]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 임직원 등의 배임·횡령 혐의가 확인된 때와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에 대해서는 자산 10% 이상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신고 공시하여야 한다.[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3]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임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배임·횡령혐의를 확인한 때,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된 때, 그리고 배임·횡령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대기업의 경우 3%) 이상 금액인 경우에 한하여 공시의무가 있다. 원래 코스닥시장의 공시규제의 내용도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배임·횡령 사건이 빈발하자, 2008년 9월 12일 개정에서 배임·횡령에 관한 공시정책을 급선회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공시의무기준도 강화하였다.

2. 배임·횡령사건의 실태의 개요

본고는 배임·횡령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의 약 5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회사가 거래소에 신고한 배임·횡령사건들을 조사하였다. 해당 조사기간 중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총 40개사, 코스닥시장의 경우 총 146개사 등, 거래소 전체로는 총 186개사가 배임·횡령과 관련하여 공시를 하였다(표 1 참조). 관련 공시 건수는 40개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총 66건, 146개의 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총 240건의 배임·횡령관련 사건을 공시하였다. 단 동일한 배임·횡령사건의 공시가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횟수 계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공시들은 모두 1회 공시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배임·횡령사건 수는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3.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시장별로 회사별 평균 배임·횡령 사건수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2010년 9월 사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총 40개사, 코스닥시장의 경우 총 146개사가 배임·횡령 사건을 공시하였다. 공시된 사건의 금액 합계는 유가증권시장 1조원 이상, 코스닥시장 약 2조 4천억원이다.

1) 제7조(주요경영사항) 제1항 제2호 라목(3)

2)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제1항

3) 제6조(공시사항 신고) 제1항 제2호 라목 (6)

1.65회, 코스닥시장은 1.64회로 거래소별로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해당 기간 중 공시된 배임·횡령사건의 시장별 총금액 규모를 살펴보면(표 1과 표 2 참조), 코스닥시장의 공시 금액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2.38배 정도 많게 나타나, 양시장간의 규모의 격차를 고려하면 코스닥시장의 문제가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0년 9월말 기준 코스닥시장의 상장회사수는 1,016개사이며 시가총액은 91조 4,883억원인데 비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각각 777개사이며 시가총액은 1,037조 6,667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의 8.8%에 불과하다. 그러나 각 시장에 있어서 회사별 평균 공시금액을 살펴보면, 주로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이 주로 중소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시장보다 약 1.5배 많다.

〈표 1〉 회사별 배임·횡령 공시금액 및 공시회수

(단위: 백만원, 개)

구분	유가증권시장 (40개사)		코스닥시장 (146개사)		상장회사 전체 (186개사)	
	회사별 공시 금액	회사별 공시사건	회사별 공시 금액	회사별 공시사건	회사별 공시 금액	회사별 공시사건
최대	160,000	4	99,800	7	160,000	7
최소	1,133	1	20	1	20	1
합계	1,011,275	66	2,407,931	240	3,419,206	306
평균	25,282	1.65	16,493	1.64	18,383	1.65

주: 1) 공시회수: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정정 및 변경공시 등의 경우 포함하지 않음
2) 원래 41개사 중 공시금액 확인 불가(케이오씨에너지)를 제외한 것임
3) 년도별 공시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2004년 최초 공시 회사 3개사(굿이엠지, 뉴켐진스템셀, 지앤이) 및 공시금액 미기재로 확인불가 회사 1개(위노바)를 제외함

〈표 2〉에서 년도별 배임·횡령 공시금액과 공시 사건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08년까지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증가하다가 2008년을 정점으로 하여 2009년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도의 경우 9월말까지의 자료이지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36억원, 코스닥시장의 경우 3,267억원으로 다행히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도별 특성을 보인 것은 투자자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규제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잠복되었던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2〉 년도별 배임·횡령 공시금액 및 공시회수

(단위: 백만원, 개)

구분	유가증권시장 (40개사)		코스닥시장 (146개사)		상장회사 전체 (186개사)	
	년도별 공시 금액	년도별 공시사건	년도별 공시 금액	년도별 공시사건	년도별 공시 금액	년도별 공시사건
2005년	166,564	11	93,395	17	259,959	28
2006년	59,495	5	89,027	17	148,522	22
2007년	152,317	4	314,816	47	467,133	51
2008년	383,770	20	911,177	72	1,294,947	92
2009년	195,525	15	672,809	62	868,334	77
2010년 9월	53,605	10	326,706	25	380,311	35
계	1,011,275	66	2,407,931	240	3,419,206	306

주: 공시회수의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정정 및 변경공시 등의 경우 포함하지 않음

3. 회사별 배임·횡령 사건의 상대적 규모

〈표 3〉에서 회사별 배임·횡령사건의 상대적 규모를 살펴보면, 자기자본(자본잠식상태인 경우에는 자본금) 대비 16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평균 배임·횡령사건 규모는 자기자본(자본금) 대비 187.6%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78.8%에 비해 매우 크다. 그러나 최대치 2개 및 최소치 2개, 즉 극단치 4개사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각각 66.2%와 76.4%를 보이고 있어 통상적인 배임·횡령사건에 있어 그 비율규모는 양 시장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극단적인 4개의 사건에 대해, 사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준엄한 사법처리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표 3〉 회사별 자기자본(또는 자본금) 대비 배임·횡령 공시금액 비율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전체	
	전체	극단치 4개 제외	전체	극단치 4개 제외	전체	극단치 8개 제외
표본수(개)	40	36	146	142	186	178
평균(%)	78.8	66.2	187.6	76.4	164.7	74.3

주: 1) 149개사(공시금액 미기재로 확인불가 1개 표본 제외)

2)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최소치2개와 최대치2개를 제외한 것임

4. 배임·횡령사건 공시회사의 상장폐지 실태

배임·횡령사건을 공시한 191개 상장회사 중에서 49%에 해당하는 93개사가 결국은 상장폐지되어 배임·횡령사건과 상장폐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41개 대상회사 중 40%에 해당하는 15개사가 상장폐지로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상장이 유지된 나머지 25개 상장회사 중에서 4개사는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되었다.[4]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150개 대상회사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78개사가 상장폐지되었으며, 상장이 유지된 나머지 72개 상장회사 중에서 12개사가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배임·횡령사건을 공시한 191개 상장회사 중에서 49%에 해당하는 93개사가 결국은 상장폐지되어 배임·횡령사건과 상장폐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배임·횡령으로 인한 상장폐지 회사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0개사와 33개사로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에 정점을 이루었던 배임·횡령사건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표 4 참조).

〈표 4〉 배임·횡령사건 공시회사의 상장폐지 실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대상회사		41	150	191
상장유지 (관리종목)		25 (4)	72 (12)	97 (16)
상장폐지	2005년	0	3	3
	2006년	1	0	1
	2007년	0	4	4
	2008년	3	10	13
	2009년	5	35	40
	2010년	7	26	33
	합 계	16	78	94
	수정합계	15	78	93
	상장폐지율	40%	52%	49%
상장유지 (관리종목)		25 (4)	72 (12)	97 (16)

주 : 1) 유가증권시장은 앞에서 제외된 1개사 포함
2) 코스닥시장은 앞에서 제외된 4개사 포함
3) 유가증권시장 2010년 자료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국민은행 제외

자료: 2010년 9월 말 기준

4) 참고로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기간 내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한편 자료 중에서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완전자회사화 과정에서 상장폐지되어서 배임·횡령사건과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표 5〉를 통해 배임·횡령으로 인한 상장폐지 회사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 상장회사들의 배임·횡령 평균 공시금액은 198억8천만원이고 이들이 배임·횡령공시로부터 상장폐지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84일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배임·횡령 공시 후 상장폐지된 상장회사들의 평균 공시금액은 247억 3천만원이고 공시로부터 상장폐지에 소요된 기간은 411일이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배임·횡령 공시 후 상장폐지된 상장회사들의 평균 공시금액은 190억 1천만원이고 공시로부터 상장폐지에 소요된 기간은 497일으로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금액은 적은 대신 소요기간은 더욱 장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공시로부터 상장폐지에 걸린 기간이 가장 길었던 것은 톰보이(유가증권시장)로서 1,961일이 소요되었던데 비해, 가장 짧았던 것은 하우리(코스닥시장)로서 불과 8일이 소요되었다.

〈표 5〉 배임·횡령 공시회사 중 상장폐지된 회사의 정보

구분	유가증권시장 (41개사중 14개)		코스닥시장 (150개사중 78개)		상장회사 전체 (191개사중 92개사)	
	공시금액 (백만원)	공시~ 상장폐지 기간(일)	공시금액 (백만원)	공시~ 상장폐지 기간(일)	공시금액 (백만원)	공시~ 상장폐지 기간(일)
합계	346,350	-	1,483,425	-	1,829,775	-
최대	81,513	1,961	75,114	1,814	81,513	1,961
최소	1,133	11	429	8	429	8
평균	24,739	411	19,018	497	19,889	484

주: 1) 유가증권시장은 원래 16개사가 상장폐지되었으나,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완전자회사화 과정의 상장폐지이므로 제외되었고, 케이씨오에너지는 공시금액 미확인으로 제외됨

5. 배임·횡령 주체 및 범죄수법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사건들은 주로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 이사, 집행임원 등과 같은 경영진과 최대주주·주요주주 등과 같은 대주주가 주된 위법행위자이며, 기타 직원 등에 의한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동원된 범죄수법은 회사재산인 현금·예금·CD[5]의 무단인출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매우 다양한 배임·횡령 수법이 사용되었다.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배임·횡령 사건들은 주로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 Certificate of Deposit(양도성예금증서)

- 회사자금(현금, 예금, CD, 어음·수표)의 무단 인출
- 유상증자대금 및 사채납입대금 무단 인출
- 회사자금 대여 또는 타회사 투자 후 유용
- 타회사에 대한 부실(과대평가) 투자
- 타회사 투자주식 또는 보유 자기주식의 무단 인출·사용(담보제공 등)
- 어음·수표의 불법적인 발행 후 할인·유용
- 불법적인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 불법적인 자금조달·차입 후 무단 인출
- 선급금·가지급금 지급 후 반대급부 확보 곤란 초래
- 보유주식 양도 후 대금 미확보 초래
- 위조 주문서를 이용한 물품 수령 후 임의 처분
- 불법적인 부동산 매도 후 대금 유용
- 부실 대출심사
- 고객예탁금 횡령
- 경영자문료 불법 지급
- 허위·불량 채권의 고가매입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위조 CD의 교부
- 비자금 조성 후 유용
- 회사재산권의 부당 양도

III. 배임·횡령 관련 주요 사례

1. 고제 사례

고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던 기업으로서 일련의 대규모 배임·횡령사건의 발생 이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을 사유로 하여 2010년 4월 23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되었다. 2010년 2월에 작성된 2009년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제는 영업부진 및 횡령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우발부채 등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가 제시되지 않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고제는 2007년 1월 24일 최초 배임·횡령 사건을 공시한 이후, 2008년 4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배임·횡령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였다. 이때 배임·횡령 혐의 발생금액은 444억3천만원으로 자본금대비 385.37%이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하여 기업도산을 유발하였다. 배임·횡령 주체를 살펴보면, 대주주가 246억8천만원을 횡령하고, 대표이사가 197억4천만원을 배임·횡령하였다.

고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던 기업으로서, 2007년 1월 24일 최초 배임·횡령 사건을 공시한 이후, 2008년 4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주주가 246억8천만원을 횡령하고, 대표이사가 197억4천만원을 배임·횡령하였다.

고제는 2008년 11월 28일 또 다른 내용의 배임·횡령 사건을 공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제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대표이사에 의한 42억 3천만원(자본금대비 81.66%)의 배임·횡령 혐의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대표이사가 2008년 8월 14일 아무런 변제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최대주주의 관계회사에 30억원을 송금하였으나,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 관계회사는 최대주주인 법인의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었다. 둘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11억 3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최대주주의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계약서 및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다. 셋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2008년 9월 10일 회사에서 1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았다. 회사는 횡령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배임·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하였다고 공시하였다.

고제는 2008년 12월 30일 다시 다른 내용의 배임·횡령 사건을 공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하여금 41억원(자본금대비 79.04%)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2007년 10월 22일에 발생된 사건으로서 1년 이상이 경과한 2008년 12월 29일에 확인된 것이다. 회사는 사기 및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였고, 혐의가 확인되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하였다. 결국 고제는 2010년 4월 9일 감사의견 거절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공시하였다.

2. 쏠라엔텍 사례

쏠라엔텍은 1997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2008년 총5차례에 걸친 배임·횡령사건이 발생된 후, 2010년 5월 8일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을 이유로 하는 감사의

견 거절로 상장폐지되었다.

쏠라엔텍은 2008년 4월 8일 배임·횡령 사건을 공시하였다. 신임 대표이사가 회사업무 파악 중에 전임 대표이사의 120억원 횡령사건을 발견한 것인데, 횡령혐의 발생금액 120억원은 자기자본(222억 6천만원) 대비 53.89%였다.

쏠라엔텍은 199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2008년 총5차례에 걸친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된 후, 2010년 5월 8일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을 이유로 하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되었다.

2008년 6월 3일 다시 배임·횡령 사건을 공시하였는데, 전임 대표이사와 이사가 전환사채의 재매수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공시하였다. 쏠라엔텍이 발행하는 134억4천만원의 전환사채를 상대방회사가 인수하고 쏠라엔텍은 동 전환사채를 원취득가액의 12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대방회사로부터 재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배임혐의 금액은 33억6천만원으로서 자기자본 대비 15.09%이다.

2008년 7월 18일에는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 CD 68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공시하였는데, 횡령금액은 2007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30.54%이다. 이 사건은 반기감사 준비 중에 발견되었으며, 회사는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공시하였다. 2009년 1월 12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으나, 회사는 추가적인 대응방침을 표명하였다.

2008년 8월 6일에는 전임 대표이사가 35억 2천만원(자기자본 대비 15.82%)에 해당하는 회사소유 자사주, 현금,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공시하였다. 즉 회사소유 자사주 227,709주와 회사소유 현금 6억3천만원을 무단인출하고, 타법인출자 명목으로 28억원을 인출후 횡령한 것이다.

2008년 8월 11일 공시 내용은 전임 대표이사가 위조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회사명의 원금보장각서를 제공한 총 31억 1천만원 규모(자기자본대비 13.99%)의 배임·횡령사건이다. 즉 첫째, 전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억원의 위조약속어음을 공증하였고, 둘째,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임의로 5억원의 변상을 약속하는 회사명의 원금보장각서를 제공하여 회사소유 주식이 가압류 당하였으며, 셋째,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4억1천만원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후 첫째 사안과 셋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금 5억원을 지급하고 해결하였으며, 합의금 중 1억원은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다. 둘째 사안에 대해

서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3. 모빌탑 사례

모빌탑은 2006년 1월 2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3차례의 배임·횡령사건 발생 후, 2009년 11월 25일부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장폐지되었다.

모빌탑은 2006년 1월 2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3차례의 배임·횡령사건 발생 후, 2009년 11월 25일부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장폐지되었다.

1차 배임·횡령 사건은 2008년 2월 15일, 2월 18일, 2월 19일, 3월 7일, 3월 19일, 3월 31일, 2009년 2월 20일 공시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표이사가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자기자본대비 156.12%에 해당하는 회사자금 314억 5천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회계감사 종료 후 고소하였고, 법적 조치를 통해 횡령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하였다.

2차 배임·횡령 사건은 2009년 9월 9일 공시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표이사가 개인채무의 지급보증 및 변제를 위해 31억원(자기자본대비 12.49%) 규모의 회사재산 손실을 초래하였다. 즉 이사가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동 채무의 불이행으로 모빌탑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자가 모빌탑의 예금 등을 압류하였다. 그리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비상장기업에 회사자금 11억 5천만원을 대여하여 부실채권화된 것이다. 모빌탑은 2009년 6월 30일 현재 대여금 11억 5천만원에 대해 5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근저당설정액 20억에 대해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로 6억원을 계상하였다.

3차 배임·횡령 사건은 2009년 9월 11일과 11월 5일 공시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사가 2009년 2월경 모빌탑이 인수할 계획도 인수할 자금도 없는 대상회사 주식 42만주를 30억원(자기자본대비 11.89%)에 인수하는 것으로 회사명의를 도용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문서를 행사하여 주식선급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현재 선급금 30억원에 대해 20%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그 후 선급금 30억원에 해당하는 대상회사 주식 42만주를 취득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IV. 결론: 요약 및 개선방안 제시

우선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배임·횡령사건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코스닥시장에서 배임·횡령사건이 압도적으로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간적으로는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이 자기자본(또는 자본금) 대비 더 큰 규모의 배임·횡령 규모를 보인다. 그러나 극단적인 4개의 사건을 제외하면 회사규모 대비 상대적 배임·횡령 규모는 두 시장 모두 비슷하다. 셋째, 배임·횡령사건의 위반행위자는 대부분 대표이사와 대주주로서 이들은 당해 기업에 대한 소유·경영지배권을 장악한 것을 계기로 매우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회사재산을 대규모로 착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배임·횡령사건의 결과로 상당수 회사들이 재무적 기반이 훼손되어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중소기업들이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들의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상장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소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1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 내부의 업무 지원체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장회사협의회나 거래소 차원에서 사외이사 협의회나 감사 협의회를 설치한다면, 이를 통해 사외이사와 감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지원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소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외이사 및 감사 관련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소액주주들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회사의 경영을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사외이사 및 감사 관련 공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의 선임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과의 이해관계 및 인적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공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 및 감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공시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 활동 및 결과의 정도를 질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계량지표 등의 방식을 통해 점수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이나 거래소 감시부서의 주의력을 집중할 대상이 어느 회사인지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액주주들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회사의 경영을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Shadow Voting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전자화 등을 통해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제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Shadow Voting 제도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데 이는 반가운 일이다. 한편 소수주주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앞서 제안한 것처럼 사외이사 및 감사의 관계성이나 활동성 지표가 불량한 기업의 경우에 한해,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서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사외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세훈, 송홍선, 정윤모, 2010, 『중소상장기업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자본시장연구원 학술연구용역보고서.

정윤모, 2011, 배임 횡령 사건을 통해 본 중소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제,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웹사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law.krx.co.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krx.co.kr
한국상장회사협의회	www.klca.or.kr